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金勇錫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542호
- 나. 제안자 : 김용석 의원 외 10명
- 다. 제안일자 : 2016년 11월 23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4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목적에 대학교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을 추가하고, 대학교 학칙의 설치 근거와 기본적인 이념을 신설하며,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총장의 임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대학교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서울시립대학교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대학교 운영의 원칙에 「교육기본법」 제2조의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등의 교육이념을 추가함(안 제2조).
- 다. 대학교 학칙의 설치 근거 마련 및 학칙에 담아야 할 기본적인 이념을 추가함(안 제2조의2 신설).
- 라. 대학교 발전과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대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 마. 대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의 근거와 임기 및 후임자 선임기간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목적에 대학교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을 추가하고, 대학교 학칙의 설치 근거와 기본적인 이념을 신설하며,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총장의 임기 등을 마련하는 대학교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대학교 운영 원칙 정비 등(안 제1조 및 제2조, 안제 2조의2와 안 제3조의2신설)

- 안 제1조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 등 조례 설치목적을 명확히 정해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자치법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안 제2조에서는 시립대 운영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인용하고 있는 기존의 「고등교육법」 28조1)가 현재의 대학교 운영원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교육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2조2)를 근거법으로 추가하고자 함.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정과 관련한 근거는 자치법규의 체계상 운영의 원칙에서 정하기 보다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안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학교의 등록금의 범위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학재정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1호 규정 등에 따라 입학금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이 밖에 현재 시립대의 조직, 학사운영, 학생생활과 포상 등을 정하는 학칙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 제2조의2를 신설하

1)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자 하며, 대학교 운영의 기본원칙이 되는 학칙이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임.

다. 대학교운영위원회 운영(안 제3조)

- 안 제3조는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운영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는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및 교원임용을 비롯한 기타 대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주요기구이며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와 달리 시립대 운영위원회는 대학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주요 사안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의기구로 학칙의 개·폐와 같은 사항까지 심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음.
- 실제 최근 3년간 상위법령 개정과 교육부 정책변화 등에 따라 매년 7~8회의 학칙개정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연1회 정도 열리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충분히 논의하기 곤란함.

〈시립대 학칙개정 및 운영위원회 개최 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월
학칙개정횟수	5회	7회	8회	8회
시립대 운영위원회 개최횟수	1회	1회	2회	1회

- 이처럼,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현재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개정안과 같이 조례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엇갈릴 수 있음.
- 학칙 개정과 같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시립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립대학교 운영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자치법규인 조례

로 정해 운영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총장 설치 근거와 임명절차 등(안 제3조의3 신설)

- 안 제3조의3은 시립대의 장으로 두는 총장에 대한 근거규정과 함께 역할과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시립대를 대표하는 총장에 대한 근거를 기존과 같이 학칙에 두는 것 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은 총장의 위상이나 자치법규의 체계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또한, 총장의 임기와 임명절차에 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한 것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평가됨.
- 아울러 안 제3조제3항 후단과 같이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후임자 임용과 관련한 절차도 정해 대학행정의 공백을 막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것임.

〈현행 시립대 총장 임용 절차〉

①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 ②입후보자 등록 → ③후보대상자 확정 → ④후보자 선출 → ⑤후보자 선정결과 통보(위원회→총장) → ⑥총장 임용추천(총장 → 서울시장) → ⑦ 총장 임용(서울시장)

※ 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 다만,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시립대의 총장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추천일부터 임용일까지의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자칫 안 제3조의3항 규정과 같이 1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용하도록 할 경우, 법령이 정하고 있는 60일을 초과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가 지연되거나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0일 이내에 임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 해당 조문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참고자료-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⑨ 삭제 <2016.3.2.>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①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

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등 해당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대학의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대학의 교원
2. 해당 대학의 직원
3. 해당 대학의 재학생
4. 해당 대학의 졸업생

5.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수 합계의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합계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3.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2 이상일 것

④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 심층 면접, 정책 평가 또는 정책 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방법 및 결과 반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정 결과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⑧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대학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학회계) 제3항제1호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다.

5.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제58조(신원조사 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업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제59조(신원조사결과 처리) ①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원조사회보서의 양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